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청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서 세 번째 토요일로 수정하여 국민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임기가 연동되도록 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고정적 임기가 부여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여 청년정책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과 함께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셋째 주”를 “세번째”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임용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퇴직과 함께 면직된다”를 “임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21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 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 월 <u>셋째 주</u> 토요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날) ① ----- ----- ----- -- <u>세번째</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임용) 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 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 문인력을 <u>5급 상당부터 7급 상 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u> 으로 임 용할 수 있다.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임용) ① ----- ----- ----- ----- ----- ----- <u>예산의 범위내에서 전 문임기제공무원</u>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u>별정직공무원</u> 은 청년 중에서 <u>임용하며, 임용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퇴직 과 함께 면직된다.</u>	② ----- <u>전문임기제공 무원</u> ----- 임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연 락 처	(044) 200 - 1986